수성 범어 더블유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Wonderful Citylife
수성 범어 더블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5.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에 의거 '성년자', '세대',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 · 모 · 장인 · 장모 · 시부 · 시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아들 · 딸 · 사위 · 며느리 · 손자 · 손녀 ·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전혼자녀 등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2017.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8.05.23.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 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고)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완납일(실거래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및 KB국민은행(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 신청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 호수 배정 결과 발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제2조에 의거하여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을 대상으로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 및 가점제 적용 대상을 제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에 당첨된 세대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 또는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 이하는 절상함)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w.co.kr)에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에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정)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내) : 85㎡ 이하 주택 – 당첨일로부터 5년 / 85㎡ 초과 주택 – 당첨일로부터 3년
• 재당첨 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외) : 85㎡ 이하 주택 – 당첨일로부터 3년 / 85㎡ 초과 주택 – 당첨일로부터 1년
※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즉,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함)
※ 청약과열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경기도 성남시 · 동탄2택지개발지구 · 과천시 · 광명시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광교택지개발지구 · 용인시 수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영구 · 동래구 · 진역 / 경기도 남양주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기흥구 – 공공택지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광명시 · 하남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청약 제한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기 바람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4호(2017.9.6.)」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택지에서 공급 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향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 알림(주택기금과-13, 2018.1.2.)에 의거 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 거주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는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 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대구 1년 이상 거주자	대구 1년 미만 / 경북 거주자	대구 / 경북 거주자		
일정	2019.05.28.(화)(08:00 ~ 17:30)	2019.05.29.(수)(08:00 ~ 17:30)	2019.05.30.(목)(08:00 ~ 17:30)	2019.05.31.(금)(08:00 ~ 17:30)	2019.06.07.(금)	2019.06.18.(화) ~ 2019.06.20.(목) (10:00 ~ 16:00)
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개별조회(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방문계약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함	•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 www.apt2you.com –스마트폰 : APT2you 앱	주택전시관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 18646호(2019.05.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9-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2,052.4000㎡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물연면적 : 330,612.6575㎡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4층 / 지상 최고 59층, 아파트 5개동, 총 1,340세대 중 일반분양 393세대 [조합원 947세대, 특별공급분 117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1,799대 (지하4층~지상층 설치)

1. 공급대상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민영주택	2019000463(01)	84.9974	84B	84.9974	29.9862	114.9836	3.1058	46.2172	164.3065	10.9608	133	55	13	13	26	3	78	3
	2019000463(02)	84.9911	84C	84.9911	30.0074	114.9985	3.1055	46.2138	164.3178	10.9600	104	43	10	10	20	3	61	3
	2019000463(03)	102.9949	102	102.9949	35.9124	138.9073	3.7633	56.0033	198.6739	13.2817	156	19	-	15	-	4	137	3
	합계										393	117	23	38	46	10	276	9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생활지원센터, 주민회의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금액 없음)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조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평 = ㎡ x 0.3025 또는 ㎡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원/VAT 포함)

주택형	동(라인)	층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소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19.08.20	'20.03.20	'21.01.20	'21.11.20	'22.08.20	'23.02.20	'23.08.20	입주시
84B	102동 4호	5층	1	238,641,600	360,358,400	599,0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19,800,000
		6층	1	241,828,800	365,171,2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21,400,000
		7층	1	248,203,200	374,796,800	623,0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124,600,000
		8층	1	256,171,200	386,828,800	643,0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128,600,000
		9층	1	265,334,400	400,665,600	666,0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33,200,000
		10층	1	274,896,000	415,104,000	690,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138,000,000
		11~15층	5	281,270,400	424,729,600	706,0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141,200,000
		16~20층	5	287,246,400	433,753,600	721,0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144,200,000
		21~25층	5	288,840,000	436,160,000	725,0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145,000,000
		26~29층	4	290,433,600	438,566,400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145,800,000
	104동 4호	5층	1	238,641,600	360,358,400	599,0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19,800,000
		6층	1	241,828,800	365,171,2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21,400,000
		7층	1	248,203,200	374,796,800	623,0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124,600,000
		8층	1	256,171,200	386,828,800	643,0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128,600,000
		9층	1	265,334,400	400,665,600	666,0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33,200,000
		10층	1	274,896,000	415,104,000	690,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138,000,000
		11~15층	5	281,270,400	424,729,600	706,0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141,200,000
		16~20층	5	287,246,400	433,753,600	721,0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144,200,000
		21~25층	5	288,840,000	436,160,000	725,0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145,000,000
		26~29층	4	290,433,600	438,566,400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145,800,000
		31~40층	10	291,230,400	439,769,600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146,200,000
		41~49층	9	292,027,200	440,972,800	733,0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146,600,000
		50~59층	10	293,222,400	442,777,600	736,0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147,200,000
	105동 3호	5층	1	237,844,800	359,155,200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6층	1	241,032,000	363,968,000	605,0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21,000,000
		7층	1	247,406,400	373,593,600	621,0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8층	1	255,374,400	385,625,600	641,0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28,200,000
		9층	1	264,537,600	399,462,400	664,0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132,800,000
		10층	1	274,099,200	413,900,800	688,0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137,600,000
		11~15층	5	280,473,600	423,526,400	704,0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140,800,000
		16~20층	5	286,449,600	432,550,400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143,800,000
		21~25층	5	288,043,200	434,956,800	723,0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144,600,000
		26~29층	4	289,238,400	436,761,600	726,0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145,200,000
		31~40층	10	290,433,600	438,566,400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145,800,000
		41~49층	9	291,230,400	439,769,600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146,200,000
		50~59층	10	292,425,600	441,574,400	734,0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146,800,000
84C	102동 3호	5층	1	241,032,000	363,968,000	605,0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21,000,000
		6층	1	244,219,200	368,780,800	613,0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22,600,000
		7층	1	250,593,600	378,406,400	629,0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125,800,000
		8층	1	258,561,600	390,438,400	649,0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129,800,000
		9층	1	268,123,200	404,876,800	673,0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134,600,000
		10층	1	277,684,800	419,315,200	697,0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139,400,000
		11~15층	5	284,059,200	428,940,8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142,600,000
		16~20층	5	290,433,600	438,566,400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145,800,000
		21~25층	5	292,027,200	440,972,800	733,0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146,600,000
		26~29층	4	293,222,400	442,777,600	736,0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147,200,000
	103동 5호	5층	1	241,032,000	363,968,000	605,0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21,000,000
		6층	1	244,219,200	368,780,800	613,0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22,600,000
		7층	1	250,593,600	378,406,400	629,0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125,800,000
		8층	1	258,561,600	390,438,400	649,0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129,800,000
		9층	1	268,123,200	404,876,800	673,0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134,600,000
		10층	1	277,684,800	419,315,200	697,0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139,400,000
		11~15층	5	284,059,200	428,940,8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142,600,000
		16~20층	5	290,433,600	438,566,400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145,800,000
		21~25층	5	292,027,200	440,972,800	733,0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146,600,000
		26~29층	4	293,222,400	442,777,600	736,0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147,200,000
	104동 5호	5층	1	238,641,600	360,358,400	599,0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19,800,000
		6층	1	241,828,800	365,171,2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21,400,000
		7층	1	248,203,200	374,796,800	623,0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124,600,000
		8층	1	256,171,200	386,828,800	643,0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128,600,000
		9층	1	265,334,400	400,665,600	666,0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33,200,000
		10층	1	274,896,000	415,104,000	690,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138,000,000
		11~15층	5	281,270,400	424,729,600	706,0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141,200,000
		16~20층	5	287,246,400	433,753,600	721,0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144,200,000
		21~25층	5	288,840,000	436,160,000	725,0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145,000,000
		26~29층	4	290,433,600	438,566,400	729,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145,800,000
		31~40층	10	291,230,400	439,769,600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146,200,000
		41~49층	9	292,027,200	440,972,800	733,0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146,600,000
		50~59층	10	293,222,400	442,777,600	736,0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147,200,000
102	101동 1호 103동 1호 105동 1호	5층	3	288,441,600	435,558,400	724,0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144,800,000
		6층	3	292,425,600	441,574,400	734,0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146,800,000
		7층	3	299,995,200	453,004,800	753,0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150,600,000
		8층	3	309,556,800	467,443,200	777,0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155,400,000
		9층	3	320,712,000	484,288,000	805,0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161,000,000
		10층	3	332,265,600	501,734,400	834,0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166,800,000
		11~15층	15	341,827,200	516,172,800	858,0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171,600,000
		16~20층	15	347,404,800	524,595,200	872,0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174,400,000
		21~25층	15	349,396,800	527,603,200	877,0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175,400,000
		26~29층	12	350,990,400	530,009,600	881,0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176,200,000
		31~40층	30	352,185,600	531,814,400	884,0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176,800,000
		41~49층	27	352,982,400	533,017,600	886,0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177,200,000
		50~57층	24	354,177,600	534,822,400	889,0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177,8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84.9974	84.9911	102.9949
약식표기	84B	84C	102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 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Ⅱ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분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방문 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포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특별공급, 일반공급 1, 2순위 등)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취소, 당첨된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서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자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주거지역을 주민등록상 본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후 청약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일정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의 취소가 일방적으로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B	84C	102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이하 10%)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4	3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	5
	중소기업 근로자		1	1	–	2
	북한이탈주민		1	1	–	2
	장애인		4	3	–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13	10	15	38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이하 20%)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0	15	–	35
		일반공급(25%)	6	5	–	1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3%)			3	3	4	10
합 계			55	43	19	11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결과 확인방법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05.28.(화), 08:00 ~ 17:30 (주택전시관 : 10:00 ~ 14:00)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APT2you)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신청 관련 서류 미비 자 접수 불가) ※ 수성범어 W의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 : 2019.06.07.(금)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를 허용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3.)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이하 '당해지역'이라 한다)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이하 '기타지역'이라 한다)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 호수 배정 결과 발표)
※ 청약 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 계약체결일 : 2019.06.18.(화) ~ 2019.06.20.(목)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1회 제한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5조에 따른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가. 사업주체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7조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주체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다. 사업주체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부 · 모 · 장인 · 장모 · 시부 · 시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아들 · 딸 · 사위 · 며느리 · 손자 · 손녀 ·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전혼자녀 등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동호수 결정등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세대내 무선 AP를 1개소 설치 함으로 화장실, 창고, 침실(안방)등의 구석진 곳에서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층부 세대에서는 측면 피뢰침 설비가 보일 수 있음
• 고층부 세대에서는 항공장애등에 의하여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으로 설치되며, 천정형 냉매배관만이 설치됨.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은 설치 불가함)
• 각 세대간 내부 벽체는 건식 벽체로서 그림, 벽체고정형 선반 등 벽체에서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는 설치 할 수 없음.
• 통합방재실 계획으로 관리비는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공동 부담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S.H.M(구조물 건전성모니터링) 등 인터넷 통신이 필요한 시설의 인터넷 유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103동 501호 / 104동 504, 505호 / 105동 503, 504호는 부대복리시설 옥상과 동일 레벨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매도청구 진행상황
• 당 주택건설사업부지 중 범어동 195-20(면적25.50㎡ 중 2분의1), 범어동 189-3 (면적49.10㎡), 범어동 189-7 (면적30.66㎡), 범어동 195-4 (면적881.00㎡ 중 12분의 1), 범어동 193-6 (면적193.10㎡)은 [주택법22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사용검사 전 까지 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상기 미확보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 녹색건축 예비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이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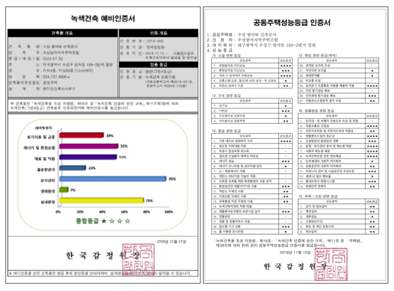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설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 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아이에스동서(주)	아이에스동서(주)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0 (범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법인등록번호	502-82-83575	110111-0208383	110111-0208383

■ 주택전시관운영

주택전시관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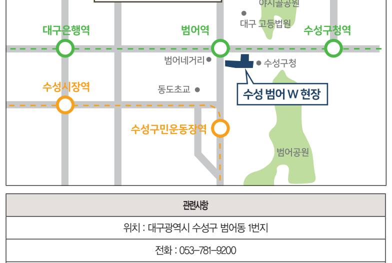

관련사항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전화 : 053–781–9200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
홈페이지운영안내 : http://www.sb-w.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주택전시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주택전시관 053)781-9200